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보다 쉽게 도용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동 지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법령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사항과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도용되어 피해가 발생해도 자신의 정보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지나치게 어려운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동 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사업자가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에 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사항으로는 소비자가 도용여부 확인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관련 기록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휴대폰 인증 등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본인확인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그 중 소비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기록을 거래상대방, 상호, 성명, 거래일시, 목적물, 거래금액, 결제업자 등으로 예시한다.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 정보가 도용되어 적립금, 아이템 등이 변경된 경우 소비자가 원상회복을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복되도록 조치하는데, 다만, 사업자가 도용사실을 확인하는데 3영업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최장 15일까지 관련 적립금, 아이템 등의 사용 제한이 가능하다.

권고사항으로 사업자는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용된 경우나 본인정보의 타인제공, 이용위임으로 도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그 피해를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본지 부록(123면 이하) 참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3월 30일자로 제정된 감면고시의 운영 과정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자진신고자 등의 편익을 증진하고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7월 1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 시행하였다.

동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두로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접수공무원이 녹화, 녹음 등의 방법으로 위반행위 사실의 개요와 제출한 증거의 목록을 보존하고 별지에 접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감면신청서의 중복접수, 접수순위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신청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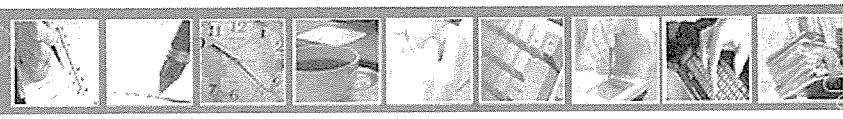

창구를 카르텔 정책팀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사업자들이 감면신청서의 접수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시에 감면신청을 접수하는 사무실 주소, 이메일 주소와 팩스번호를 명기하였고, 셋째, 내용이 복잡하거나 기간이 오래된 카르텔에 있어 자진신고자가 카르텔의 전모를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간이신청 후의 보정기간을 종래 최장 12일에서 15일로 연장하였는데, 증거 수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요청할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보정기간의 조정에 맞추어 위원회의 지위확인 기간을 조정토록 하였는데, 원칙적으로 현행 지위확인 기간(보정완료 후 15일)을 유지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6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위확인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미리 통보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감면제도와 신고포상금제도 간의 연계를 폐지, 제보자로부터 일부 증거를 입수한 후라도 아직 카르텔 입증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구두 감면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접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신청"을 하거나 접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감면신청서의 접수를 전제로 하는 현행 고시 제10조의 체제를 개편하였다.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Cartel Leniency Program)란?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가 카르텔 증거를 제공하면서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997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카르텔은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그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카르텔 적발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5년 4월 첫 번째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무조건 면제해주고 두 번째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의 30% 감경해 주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간이신청이란?

카르텔에 참가한 사업자가 일단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할 의사를 표명하고 증거자료는 사후에 보완하여 자진신고를 완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위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의 M&A 심사부담을 덜어주면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위 고시)」을 개정하여 2006. 7. 19.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서로 결합하는 수평결합의 경우에는 결합 후 상위 3사의 점유율이 50% 미만, 결합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25% 미만, 그리고 결합 후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단, 4위 사업자인 경우 3위 점유율의 75% 미만일 것), 원재료 수급관계 기업간에 결합하는 수직결합 또는 수평 및 수직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인 혼합결합은 각각의 회사가 속한 관련시장에서 상위 3사의 점유율이 50% 미만, 각각 회사의 점유율이 25% 미만, 그리고 각각의 회사가 속한 관련시장에서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로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의 유형에 관한 기준을 마련(기업결합 심사의

「안전지대(Safe Harbor)」 기준 설정)하였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위 고시)」의 간이심사대상에 「안전지대」 기준을 포함시켜 7. 19.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신고사실 확인, 관련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파악 등의 방법으로 심사 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기업결합 심사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의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반면, M&A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을 집중적으로 심사함으로써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기업결합 심사기간 비교〉

	처리건수(건)	건당 심사기간(일)	비고
안전지대 입전(2005년)	658	36.6	
안전지대 시범운용 (2006.3~6.16)	222	18.6	• 안전지대 해당 146(65.8%) • 일반심사*(30일 이내 처리) 63(28.4%) • 집중심사**(심사기간 연장) 13(5.8%)

*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고 집중심사대상도 아니지만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경우
**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심사한 경우

2006. 5 · 6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공정위는 2006년 5 · 6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변동 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6. 5월중 계열사 변동 현황〉

기업집단	2006. 5. 2.	편입				제외							증감	2006. 6. 1.
		회사설립	지분취득	기타	계	합병	지분매각	청산종결	친족분리	지정제외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14개)	466	1	-	-	1	2	-	-	-	-	-	2	△1	465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59개)	1,124	6	2	-	8	3	-	1	-	-	-	4	4	1,128

〈2006. 5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8개사(회사설립 : 6, 지분취득 : 2)

◈ 제외 : 4개사(합병 : 3, 청산종결 : 1)

기업집단	편입			제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지에스	(주)아이티멕스에스와이아이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업	회사설립	-	-	-
한국가스공사	경기씨이에스(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	-	-	-
동국제강	디케이에스앤드(주)	해운중개업 등	〃	-	-	-
대성	(주)신호환경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분취득	-	-
이랜드	(주)이랜드리테일	생활필수품 판매 및 중개업	회사설립	-	-	-
삼양	(주)세븐스프링스	레스토랑 음식업	지분취득	-	-	-
중앙일보	(주)중앙일보 엔아이이연구소	NIE·논술지도자 양성사업	회사설립	-	-	-
	(주)화인로지텍	물류 운송, 보관, 용역업	〃			
씨제이	-	-	-	(주)기장종합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 송출업	합병
대림	-	-	-	새한마텍(주)	콘크리트관련 제품 제조	〃
현대백화점	-	-	-	(주)관악인터넷	전기통신공사업	〃
동양화학	-	-	-	(주)오씨아이다스	농약원제 제조 판매 배급	청산종결

〈2006. 6월중 계열사 변동 현황〉

기업집단	2006. 6. 1.	편입				제 외							증감	2006. 6. 1.
		회사설립	지분취득	기타	계	합병	지분매각	청산종결	친족분리	지정제외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14개)	465	-	-	-	-	-	-	-	-	-	-	-	-	465
상호출자 · 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59개)	1,128	4	3	-	7	1	-	1	-	-	-	2	5	1,133

〈2006. 6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7개사(회사설립 : 4, 지분취득 : 3)

◈ 제외 : 2개사(합병 : 1, 청산종결 : 1)

기업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유
포스코	(주)에스엔엔씨	니켈광석 수입, 판매	회사설립	-	-	-
동 양	(주)동양에이앤디	부동산 개발 투자 등	〃	-	-	-
현 대 산업개발	평택아이포트(주)	평택, 당진항 내항 동부두건설, 관리 및 운영	지분취득	-	-	-
한 진 중공업	한진도시가스(주)	도시가스사업	〃	-	-	-
태광산업	(주)예가람 상호저축은행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	-	-	-
이 랜 드	(주)와인캐슬	주류수입 및 주류도매	회사설립	-	-	-
중앙일보	(주)휘닉스아일랜드	위탁관리용업 운영사업	〃	-	-	-
한 솔	-	-	-	수광산업(주)	폐기물 처리	합병
동국제강	-	-	-	디케이해운(주)	화물자동차 운송업	청산종결